

2026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1차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 채용 공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미화A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	1명	2026년 5월 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

※ 채용 대상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함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직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자로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적용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60세)

※ 수습기간(3개월)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 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근로시간

채용분야	근무일	근무시간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	주 5일 (월~금, 공휴일 휴무)	1일 8시간

라. 보 수

채용분야	기본급(월)	지급기준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	2,163,150원 (직무급제 적용)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7조(보수)에 따름

마. 복리후생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상여금 등

바.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만18세 이상인 자로(2008.12.31. 이전 출생자) 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채용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4. 14.)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 면접위원이 4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근로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및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3. 16.(월) ~ 3. 27.(금) 18:00 / 12일간

나. 접수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032-728-8916 / 8716)

※ 우) 220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IB스타워 13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봉투 상단에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 응시원서 재중 명기)
※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8:00(12:00 ~ 13:00제외)내에만 가능,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택배·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라. 세부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6. 3. 16.(월)~27.(금)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나라일터 등 게시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 : 3. 27.(금)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4. 9.(목)~10.(금)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공고 및 개별통지(합격자)
면접시험	'26. 4. 13.(월) ~14.(화)	▶ 면접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6. 4. 20.(월)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공고 및 개별통지(합격자)

※ 상기 일정은 시험 실시기관 사정, 서류검증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 ①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 1호 서식>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③ 자기소개서 <별지 3호 서식>
-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4호 서식>
- 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별지 5호 서식>
- 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6호 서식>
- ⑦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⑧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지 7호 서식>
- ⑨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별지 8호 서식>
-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9호 서식>

나.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위 순서대로 편철, A4크기(210mm×297mm)로 제출

※ 서류제출 시 [별지서식 제11호] 서류봉투 겉면 부착

다.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중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연락불능, 응시번호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7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 032-728-8916 / 87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채용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치안감 이상)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사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써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들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붙임 2

직무기술서(공무직-환경미화)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내·외부 청소 및 환경미화 ○ 환경미화 장비관리 및 세탁물 처리 업무 ○ 생활폐기물 배출 처리 관리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업무이해력, 안전수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중시하는 자세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대상물에 대한 지식 및 시설물별 적절한 청소방법 ○ 폐기물 분류 및 처리능력 등
------	---

응시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환경미화) 업무 수행 가능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다만 정년(만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별지서식 제1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무원근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응시분야 (지원코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채용담당 기재	공무원근로자 (환경미화) / (미화A)			

□ 작성 및 제출목록(총괄표)

순번	구분	비고	제출여부
1	제출서류 목록 1부 (필수)	별지서식 1	「○」 표시
2	응시원서 1부 (필수)	별지서식 2	
3	자기소개서 1부 (필수)	별지서식 3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별지서식 4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필수)	별지서식 5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필수)	별지서식 6	
7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등본이 아님에 주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공통) 전체 주민번호 포함		
8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필수)	별지서식 7	
9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필수)	별지서식 8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별지서식 9	
11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필수 아님, 반환을 원할 경우만)	별지서식 10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여부 란에 "○" 표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양면인쇄 또는 2쪽 모아찍기 금지)

위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시원서(환경미화)

응시원서			
응시직급 및 분야(코드)		공무직근로자 / 환경미화(미화A)	
응시자격		해당 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응시번호	※ 채용담당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국적:)
병역사항	<input type="checkbox"/> 필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주소 (거주지)			
전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등 채용 관련 문자가 발송되오니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본인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_____ (인)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코드)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예) 공무원근로자 / 환경미화(미화A)
- ② 응시자격 : 해당 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③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④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자기소개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공무직근로자 / 환경미화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지원동기, 기간의 근무 경력, 성품, 직장구성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 자필을 사용하여 작성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공무직근로자 / 환경미화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 예정 담당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전략, 방법, 일정 등을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 자필을 사용하여 작성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본인은 공직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으로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는 필수 입력 사항임)

▪ 성 명* (서명) ▪ 휴대전화*

▪ 주민번호*
(13자리 전체)

▪ 직 장 ▪ 직 위

▪ 직장전화 ▪ 연락팩스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출입국 및 국적자료 ----- 법무부

<별지서식 제7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확인서)

응시직급 및 분야	생년월일	성 명
공무직근로자 / 환경미화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개경쟁채용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
채용사유			
2026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1차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 채용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5월중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별지서식 제10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을 원할 경우 작성)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11호>*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 발송, 방문접수의 경우에도 해당양식 준용하여 제출

[보내는 사람]

응시구분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미화A)
성명	
휴대폰	

□	□	□	□	□
---	---	---	---	---

**'26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채용 응시자 제출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금지]**

※ 제출서류는 '26. 3. 16.(월) ~ 3. 27.(금)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소인분에 한함)

[받는 사람]

등기 발송증 부착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3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 (032) 728 - 8916 / 8716

2	2	0	0	6
---	---	---	---	---